

검 토 보 고 서

| 안 건 명 | 부서명 | 페이지 |
|--------------------------------|------|-----|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세무1과 | 1 |

(2015. 10. 27)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10월 16일(금)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10월 19일(월)

4. 관계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65조, 제80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 제67조, 제68조, 제82조
- 「지방재정법」 제77조
- 「국세징수법」 제82조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위배소지를 해소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며, 기타 인용조문 수정 및 용어정비를 통한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구세 기본 조례 안 제39조제3항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 연장

- 상위법인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 보장

나. 구세 기본 조례 안 제17조제1항 공탁 규정 삭제, 예탁으로 일원화

-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하도록 개정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5.5.18.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에 따라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하도록 하고,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체납 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 1) 상위법령(지방세기본법)에 없는 “우편”이란 용어정의를 우리 구 조례에서 삭제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공탁 수령증”을 “공탁 영수증”으로, “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를 “국채·

지방채, 사채의 등록 확인증”으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등기완료 통지서 또는 등기확인증”으로 “유보하여야 한다”를 “보류 할 수 있다”로, “유보기간”을 “보류기한”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2) 종전에는 공매 등에서 발생한 금전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이를 우리 구 금고에 예탁하도록 공탁 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

3) 「국세징수법」 제82조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최소 규정을 “징수하여야 한다”의 강제규정에서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안 제23조)

나)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1) 지방세 체납 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음(안 제39조제3항)

다) 불명확한 조례상 문구를 상위법령(지방세기본법)에 따라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시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외적으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2)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 신청자를 임차인으로 한정하였음(안 제14조제1항)

3) 조례 내용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잘못 인용된 조문 내용인 세무 공무원이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 등 신청서 접수 처리 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를 법 제80조 및 조례 제21조로 정비(안 제22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용어로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음

1) 상위법령(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을 우리 구 조항에 추가하고, “통정”을 “서로 짜고”로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음(안 제45조제2항)

2) 구청장은 “주무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주무관청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조례문구를 정비하였음(안 제15조제3항)
(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관허사업의 제한요구 통지를 받은 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내용임)

마) 그 밖에 조례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맞
추어 개정하는 것임

○ 동(同) 조례안은 2015.8.27.~9.16.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상위법
인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등 타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새로 개정된 상위법에 적합하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였고, 그 밖에 논리
적으로 맞지 않는 등 잘못 표현된 내용이나 우리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는 조
례문구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5.5.18.] [법률 제13293호, 2015.5.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 및 부과에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

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체납처분비"란 제5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2.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말한다.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7.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7.24., 타법개정]

제51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영업종목
3.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가 필요한 이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재무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시·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82조(국유·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5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